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회신학대학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대학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교단의 선교와 교역자수급 정책에 의거하여 목회자 양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목회자 양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목회환경의 변화와 선교의 다양화에 따른 목회자 양성
2. 복음전도자로서 영성 계발과 목회 능력의 전문화
3. 지역의 특성화와 전국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

제4조 (설치학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목회신학대학

제5조 (설치장소)

제4조의 설치학교를 총회 본부 및 교육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결의하여 지정한 곳에 둔다.

제6조 (운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신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여 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규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

제9조 (재정)

대학(이하 “학교”라 한다)의 자산은 총회 지원금, 등록금, 수익사업, 후원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및 집행)

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일반회계 - 교육사업
2. 수익사업회계 - 수익사업

제1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산·결산서의 제출)

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감사)

총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는 총회 감사로 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과 2항의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해 산

제16조 (해산)

학교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학교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 본부에 귀속된다.

제4장 교직원

제18조 (학교의 장)

학교의 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9조 (교직원)

위원회는 교직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대해서 따로 법령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 (개정)

이 정관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승인을 받아 학칙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